

규 칙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55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사용료 및 과징금 등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1 과징금 처분기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징금의 처분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삭 제>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 및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규정) ----- 사용료의 ----- ----- ----- -----																																							
<p>【별표 1】 과징금 처분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반내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금 액(천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 위반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 위반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 위반시</th> </tr> </thead> <tbody> <tr> <td>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r> <td>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r> <td>3. 생활폐기물에 가내공업 및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r> <td>4.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5. 스티카 미부착된 가내공업 폐기물을 혼합 반입 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6.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7.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8. 배출업소 또는 배출자가 중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body> </table>	위반내용	금 액(천원)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3. 생활폐기물에 가내공업 및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4.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행위	300	500	1,000	5. 스티카 미부착된 가내공업 폐기물을 혼합 반입 하는 행위	300	500	1,000	6.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7.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8. 배출업소 또는 배출자가 중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1,000	1,000	1,000	<삭 제>
위반내용		금 액(천원)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3. 생활폐기물에 가내공업 및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4.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행위	300	500	1,000																																					
5. 스티카 미부착된 가내공업 폐기물을 혼합 반입 하는 행위	300	500	1,000																																					
6.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7.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8. 배출업소 또는 배출자가 중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1,000	1,000	1,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법령의 부존재로 인해 개정됨에 따라 등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과징금의 처분기준) 삭제
- 나.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준용규정)중 과징금 관련 용어 삭제
- 다. [별표1] 과징금 처분기준 삭제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5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이행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83호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04호(1976.7.14)로 변경결정 되었 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8호(2010.12.16.), 서울특별 시 중구고시 제2014-34호(2014.5.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75호(2012.8.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110호(2012.12.5.)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4-110호(2014.12.17.)로 사업시행 인가(변경)되었던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사업의명칭 :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 일원
- 다. 시행면적 : 2,174.4㎡(대지면적 1,978.0㎡, 정비기반시설 196.4㎡)(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센트럴장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해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12층)
- 마. 시행기간 : 2012. 8. 1. ~ 2016. 3. 31(변경없음)
- 바.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5. 10. 2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아. 건축규모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도
기정	1,978.0	1,147.78	30,832.12	58.03	992.81	지상22/지하7	99.65	업무시설
변경	1,978.0	1,151.94	30,833.48	58.24	992.25	지상22/지하7	99.65	업무시설

-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차. 변경사유 : 오피스 사용계획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의 변경
- 카. 관계서류 : 생략(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도서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35호

이 조례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봉투가격 구성내역 등 조정
-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한 조항 삭제
-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신설
- 오기(誤記) 정정

2.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의 가격 구성내역 등 조정 (안 제5조 관련 별표2, 제10조)
 - 종량제봉투 가격이 2015.10.1.에 인상됨에 따라 규격봉투의 구성내역(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봉투제작비·반입수수료) 조정 (안 제5조 관련 별표2)
 - 봉투판매이윤을 수집운반비의 8%에서 봉투가격의 6%로 변경 (안 제10조)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절차 신설 (안 제12조, 별지 제3호,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신설
 - 조례 제2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의 지정요건 등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제9조, 별표3)

- 조례 제40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르기로 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9조와 별표3 삭제

○ 오기(誤記) 조항 개정 (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 제2호 : 단체표준가격 ⇒ 단체표준규격

- 안 제8조제1항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53, FAX:3396-8748, 메일 : ecocb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단체표준가격”을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조례 제38조제1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판매이윤은 수집운반비의 8%로 한다.”를 “판매이윤은 봉투가격의 6%로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의 지정요건 등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1999.5.31. 개정, 2003.3.28. 개정)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용봉투

(단위: 원)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등	판매가	판매이윤
3ℓ	80	60	5	15	90	5
3ℓ(재)	80	60	5	15	90	5
5ℓ	120	79	7	34	130	8
10ℓ	220	168	13	39	250	15
20ℓ	440	336	26	78	490	29
20ℓ(재)	440	336	26	78	490	29
30ℓ	660	503	40	117	740	44
50ℓ	1,100	838	66	196	1,250	75
75ℓ	1,650	1,254	99	297	1,880	113
100ℓ	2,220	1,676	133	411	2,500	150

○사업장폐기물용봉투

(단위: 원)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등	판매가	판매이윤
50ℓ	1,800	669	108	1,023	2,000	120
75ℓ	2,700	1,004	162	1,534	3,000	180
100ℓ	3,600	1,339	216	2,045	4,000	240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제작비및반 입수수료등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1,840	538	110	1,192	2,040	122
50ℓ	4,590	1,343	275	2,972	5,100	306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 관련)

제 호	총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총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p>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1999.05.31.개정, 2003.03.28개정]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p> <p>1. 일반규격봉투 ○ 생활폐기물용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량</th> <th>계 (봉투가격)</th> <th>수집운반비</th> <th>봉투제작비</th> <th>판매이윤</th> <th>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th> </tr> </thead> <tbody> <tr><td>5ℓ</td><td>80</td><td>61</td><td>11</td><td>5</td><td>3</td></tr> <tr><td>10ℓ</td><td>170</td><td>130</td><td>16</td><td>10</td><td>14</td></tr> <tr><td>20ℓ</td><td>340</td><td>259</td><td>26</td><td>20</td><td>35</td></tr> <tr><td>30ℓ</td><td>510</td><td>389</td><td>37</td><td>31</td><td>53</td></tr> <tr><td>50ℓ</td><td>850</td><td>648</td><td>64</td><td>52</td><td>86</td></tr> <tr><td>75ℓ</td><td>1,270</td><td>971</td><td>87</td><td>76</td><td>136</td></tr> <tr><td>100ℓ</td><td>1,700</td><td>1,296</td><td>114</td><td>104</td><td>186</td></tr> </tbody> </table> <p>○ 사업장폐기물용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량</th> <th>계 (봉투가격)</th> <th>수집운반비</th> <th>봉투제작비</th> <th>판매이윤</th> <th>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th> </tr> </thead> <tbody> <tr><td>50ℓ</td><td>1,020</td><td>637</td><td>64</td><td>51</td><td>268</td></tr> <tr><td>75ℓ</td><td>1,520</td><td>956</td><td>88</td><td>77</td><td>399</td></tr> <tr><td>100ℓ</td><td>2,030</td><td>1,275</td><td>114</td><td>102</td><td>539</td></tr> </tbody> </table> <p>2. 특수규격봉투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량</th> <th>계 (봉투가격)</th> <th>수집운반비</th> <th>봉투제작비</th> <th>판매이윤</th> <th>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th> </tr> </thead> <tbody> <tr><td>50ℓ</td><td>1,010</td><td>638</td><td>223</td><td>51</td><td>98</td></tr> </tbody> </table>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ℓ	80	61	11	5	3	10ℓ	170	130	16	10	14	20ℓ	340	259	26	20	35	30ℓ	510	389	37	31	53	50ℓ	850	648	64	52	86	75ℓ	1,270	971	87	76	136	100ℓ	1,700	1,296	114	104	186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0ℓ	1,020	637	64	51	268	75ℓ	1,520	956	88	77	399	100ℓ	2,030	1,275	114	102	539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0ℓ	1,010	638	223	51	98	<p>[별표2] (1999.5.31. 개정, 2003.3.28. 개정)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p> <p>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2015.10. 1. ~ 2016.12.31.</th> <th colspan="2">2017. 1. 1. ~</th> </tr> <tr> <th>판매가</th> <th>수집운반비</th> <th>판매이윤</th> <th>반입수수료, 제작비</th> <th>판매가</th> <th>판매이윤</th> </tr> </thead> <tbody> <tr><td>3ℓ</td><td>80</td><td>60</td><td>5</td><td>15</td><td>90</td><td>5</td></tr> <tr><td>5ℓ</td><td>120</td><td>79</td><td>7</td><td>34</td><td>130</td><td>8</td></tr> <tr><td>10ℓ</td><td>220</td><td>168</td><td>13</td><td>39</td><td>250</td><td>15</td></tr> <tr><td>20ℓ</td><td>440</td><td>336</td><td>26</td><td>78</td><td>490</td><td>29</td></tr> <tr><td>30ℓ</td><td>660</td><td>503</td><td>40</td><td>117</td><td>740</td><td>44</td></tr> <tr><td>50ℓ</td><td>1,100</td><td>838</td><td>66</td><td>196</td><td>1,250</td><td>75</td></tr> <tr><td>75ℓ</td><td>1,650</td><td>1,254</td><td>99</td><td>297</td><td>1,880</td><td>113</td></tr> <tr><td>100ℓ</td><td>2,220</td><td>1,676</td><td>133</td><td>411</td><td>2,500</td><td>150</td></tr> </tbody> </table> <p>○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2015.10. 1. ~ 2016.12.31.</th> <th colspan="2">2017. 1. 1. ~</th> </tr> <tr> <th>판매가</th> <th>수집운반비</th> <th>판매이 윤</th> <th>반입수수료, 제작비</th> <th>판매가</th> <th>판매이 윤</th> </tr> </thead> <tbody> <tr><td>50ℓ</td><td>1,800</td><td>669</td><td>108</td><td>1,023</td><td>2,000</td><td>120</td></tr> <tr><td>75ℓ</td><td>2,700</td><td>1,004</td><td>162</td><td>1,534</td><td>3,000</td><td>180</td></tr> <tr><td>100ℓ</td><td>3,600</td><td>1,339</td><td>216</td><td>2,045</td><td>4,000</td><td>240</td></tr> </tbody> </table> <p>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2015.10. 1. ~ 2016.12.31.</th> <th colspan="2">2017. 1. 1. ~</th> </tr> <tr> <th>판매가</th> <th>수집운반비</th> <th>판매이윤</th> <th>반입수수료, 제작비</th> <th>판매가</th> <th>판매이윤</th> </tr> </thead> <tbody> <tr><td>20ℓ</td><td>1,840</td><td>538</td><td>110</td><td>1,192</td><td>2,040</td><td>122</td></tr> <tr><td>50ℓ</td><td>4,590</td><td>1,343</td><td>275</td><td>2,972</td><td>5,100</td><td>306</td></tr> </tbody> </table>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윤	3ℓ	80	60	5	15	90	5	5ℓ	120	79	7	34	130	8	10ℓ	220	168	13	39	250	15	20ℓ	440	336	26	78	490	29	30ℓ	660	503	40	117	740	44	50ℓ	1,100	838	66	196	1,250	75	75ℓ	1,650	1,254	99	297	1,880	113	100ℓ	2,220	1,676	133	411	2,500	150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 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 윤	50ℓ	1,800	669	108	1,023	2,000	120	75ℓ	2,700	1,004	162	1,534	3,000	180	100ℓ	3,600	1,339	216	2,045	4,000	240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1,840	538	110	1,192	2,040	122	50ℓ	4,590	1,343	275	2,972	5,100	306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ℓ	80	61	11	5	3																																																																																																																																																																																																																		
10ℓ	170	130	16	10	14																																																																																																																																																																																																																		
20ℓ	340	259	26	20	35																																																																																																																																																																																																																		
30ℓ	510	389	37	31	53																																																																																																																																																																																																																		
50ℓ	850	648	64	52	86																																																																																																																																																																																																																		
75ℓ	1,270	971	87	76	136																																																																																																																																																																																																																		
100ℓ	1,700	1,296	114	104	186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0ℓ	1,020	637	64	51	268																																																																																																																																																																																																																		
75ℓ	1,520	956	88	77	399																																																																																																																																																																																																																		
100ℓ	2,030	1,275	114	102	539																																																																																																																																																																																																																		
용량	계 (봉투가격)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0ℓ	1,010	638	223	51	98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윤																																																																																																																																																																																																																	
3ℓ	80	60	5	15	90	5																																																																																																																																																																																																																	
5ℓ	120	79	7	34	130	8																																																																																																																																																																																																																	
10ℓ	220	168	13	39	250	15																																																																																																																																																																																																																	
20ℓ	440	336	26	78	490	29																																																																																																																																																																																																																	
30ℓ	660	503	40	117	740	44																																																																																																																																																																																																																	
50ℓ	1,100	838	66	196	1,250	75																																																																																																																																																																																																																	
75ℓ	1,650	1,254	99	297	1,880	113																																																																																																																																																																																																																	
100ℓ	2,220	1,676	133	411	2,500	150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 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 윤																																																																																																																																																																																																																	
50ℓ	1,800	669	108	1,023	2,000	120																																																																																																																																																																																																																	
75ℓ	2,700	1,004	162	1,534	3,000	180																																																																																																																																																																																																																	
100ℓ	3,600	1,339	216	2,045	4,000	240																																																																																																																																																																																																																	
구 분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판매가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1,840	538	110	1,192	2,040	122																																																																																																																																																																																																																	
50ℓ	4,590	1,343	275	2,972	5,100	306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종량제봉투 판매소</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 </td> </tr> <tr> <td>신 성 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청 상 호</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인 주 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판매소 위치</td> <td>서울특별시 중구 로(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내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td> </tr> <tr> <td>구비</td> <td>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td> </tr> <tr> <td>서류</td> <td>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1통</td> </tr> </table>	종량제봉투 판매소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주 소	(☎)	판매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서류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1통
종량제봉투 판매소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주 소	(☎)																						
판매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서류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1통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지 제4호서식] (제12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30 351 1765 619"> <thead> <tr> <th data-bbox="1030 351 1254 459">제 호</th> <th colspan="2" data-bbox="1254 351 1765 459">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30 459 1254 499">성 명</td> <td data-bbox="1254 459 1594 499">생년월일</td> <td data-bbox="1594 459 1765 499"></td> </tr> <tr> <td data-bbox="1030 499 1254 539">주 소</td> <td colspan="2" data-bbox="1254 499 1765 539"></td> </tr> <tr> <td data-bbox="1030 539 1254 579">상 호</td> <td colspan="2" data-bbox="1254 539 1765 579"></td> </tr> <tr> <td data-bbox="1030 579 1254 619">판 매 소 위치</td> <td colspan="2" data-bbox="1254 579 1765 619"></td> </tr> </tbody> </table> <p data-bbox="1030 766 1765 85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data-bbox="1321 861 1500 901">년 월 일</p> <p data-bbox="1209 957 1568 997">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p>	제 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치		
제 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치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개정 2013.08.28.)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삭 제>		
부 과 대 상	금 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50	50	50	
가. 별도 구 없이 휴지통에 있는 폐기물(담배꽂이, 휴지 껌 등) 버린 경우	200	200	20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	20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0	500	5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	1,000	1,0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폐기물(건축폐자재류 등)을 버린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0	0	0	
바.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200	300	50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 제3항)	300	700	1,000	
			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금 액(천원)			<삭 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조례 제8조 및 제10조)	100	200	300	
가. 조례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된 폐기물의 배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배출한 경우	100	200	300	
나.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0	200	300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0	200	300	
마. 종량제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00	200	300	
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100	200	300	
사. 조례 제2조제5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200	300	
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17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주) 1.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2.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3.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이 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2 [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붙임3]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2015.9.30. 개정)

제26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9.3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36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부의 안건 : 조례안 16건

연번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3396-4403)
2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 보 실 (3396-4962)
3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경제과 (3396-5075)
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약 과 (3396-6401)
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지원과 (3396-5303)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사회복지과 (3396-5375)
7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3396-5372)
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공의 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3396-5372)
9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22)
1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22)
1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22)
12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3396-5462)

연번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13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3396-5612)
14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심재생과 (3396-5754)
15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환경과 (3396-6009)
16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관리과 (3396-6262)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3396-4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739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상한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을 민간위원까지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공공성을 제고함(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2인) : 기획재정국장, 호산된 민간위원
-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의결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일 40일 전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규정하여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함(안 제15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 → 재무관으로 변경하여 통일성 부여
(안 제61조본문,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70조제7항 및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5013, FAX : 3396-8670, 63dms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재무과 (☎3396-50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 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17조에 따르며”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를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인건비,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70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⑦경리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⑦재무관-----</p> <p>-----</p> <p>-----.</p>